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작물 해체 신고·허가 제도 신설 등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4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박성훈의원안(제221634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작물 해체 신고·허가 제도 신설 등(안 제45조의2 신설 등)	2

I. 박성훈의원안(제2216346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공작물 해체 신고·허가 제도 신설 등(안 제4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보고 및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물의 구조·규모·높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작물의 해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로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u><신설></u>	제51조(벌칙)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5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공작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45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공작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제51조의2(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5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52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45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u>
제5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54조(과태료) ④ ----- ----- ----- 1. ~ 8. (현행과 같음) <u>11.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⑤ (현행과 같음)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원본) 참고자료 참조	

개정안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¹⁾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뜻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이하 생략)

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2025년 11월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 대형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 등 공작물 해체 사고와 관련하여, 현행법²⁾은 상태점검 의무 및

2)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방법·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인·허가 대상을 ‘건축물’로만 한정하고 있어 붕괴된 구조물과 같은 ‘공작물’의 상태점검 및 해체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작물 해체와 관련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공작물의 축조³⁾부터 해체까지의 생애주기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30조제1항4)의 “이하 이 장에서”를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45조의2제1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둘째, 안 제54조제4항제11호는 안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4조제4항은 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1호를 제9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체중인 공작물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해체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공작물 해체 신고·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제2216365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5조의2(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보고 및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작물의 구조·규모·높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③ 공작물의 해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로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u>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u><신설></u> 11. 제30조제4항(<u>제30조의3제1항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2. 제30조제5항(<u>제30조의3제1항에</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	제51조(벌칙)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5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공작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45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공작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u>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u>----- ----- ----- ----- ----- ----- 12. -----<u>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u>----- ----- ----- ----- -----

현행	개정안
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
1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4.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5.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5. -----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6.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6. 제30조의4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7.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7. 제31조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각----- -----
18.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8. 제32조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현행	개정안
19.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19. 제32조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0. 제32조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1.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1. 제32조의2(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45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2. -----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 ----- -----
3.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3. 제30조의3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현행	개정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4.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4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5. 제32조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2(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45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8. -----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 -----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9. 제30조의2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현행	개정안
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0.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4. ~ 17. (생략)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 ----- 10. -----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1. 제31조제2항제2호(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제31조제6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3. 제32조제3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4. ~ 17.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 ----- -----. 1. -----제4호(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32조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32조제2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해체공사감리자	-----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8. ----- -----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 -----제30조의3제1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⑤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3제3항(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현행과 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11.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585